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43호 2020. 8. 10(월)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2020-1506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 ----- 1
- 남원시 공고 제2020-1515호 도로지정공고 ----- 12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공고 제2020-1506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고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남 원 시 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3항 신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법령에 따른 시설사용료 50% 감면

나. 사용료의 미반환 규정 정비 (안 제13조)

- 원칙적 미반환 → 반환사유 예시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0. 8. 11. ~ 2020. 8. 31. (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교육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우편번호 : 55738
- (2) 주 소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063-620-6971),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직접 방문 등

5.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063-620-56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20.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교육체육과장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반영하고 위법·소극행정을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계획’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 조항 정비 (안 제12조제3항 신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8개 법령에 따른 시설사용료 50% 감면
- 나. 사용료의 미반환 규정 정비 (안 제13조)
 - 원칙적 미반환 → 반환사유 예시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 2020. 8. 11. ~ 2020. 8. 31.(20일간)
 - 결 과 :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3) 규제예비심사 :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남원시”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관리하는”으로 한다.

제12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역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리·운영상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3. 사용자가 착오 신청 등으로 사용신청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5.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반환
2.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전날 18:00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개시 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남원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가 설치·관리하는 ----- -----.</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생략) <신설></p>	<p>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p>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생략)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관리·운영상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

용개시일 7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용개시일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5.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착오 신청 등으로 사용신청일 당일에 취소하는 경우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그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5. 사용자가 용개시일 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용개시일 2일 전부터 4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반환

2. 사용자가 용개시일 전날 18:00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3. 사용자가 용개시 후 남은 일수를 취소한 경우 : 잔여일수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③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하지 않는다.

◎ 남원시 공고 제 2020 - 1515호

도로지정공고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1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2020-	남원시 왕정동 32-2, 32-4	허@@	2020-건축과- 신축허가-59	30.5	3.5	107	남원시 왕정동 32-4	107	이@@